

의안번호 제135호

재단법인 논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

| 제 출 자 | 논 산 시 장 |
|-------|---------------|
| 제출연윌일 | 2020. 10. 13. |

재단법인 논산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

의 안 번 호 제135호 제출연월일: 2020. 10. 13. 제 출 자: 논 산 시 장

1. 제안이유

-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여가시간 증가로 문화·관광분야에 대한 수요가 증대됨에 따라
- 전문화된 서비스 제공 및 지역자원을 활용한 문화관광 활성화를 위해 「논산문화관광재단」의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에 대하여「지방재정법」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논산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.

2. 출연개요

- O 설립근거
 - 「민법」제32조(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)
 - 「지역문화진흥법」제19조(지역문화재단의 설립)
 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제4조
 - 「논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」제6조
- O 출연기관: 재단법인 논산문화관광재단
- O 설립형태: 비영리 재단법인
- O 재단설립: 2020년 하반기 (예정)
- O 출 연 금: 총 3,105,733천원
 - 가. 50,000천원 (2020년 3추 예산): 자본금(기본재산)
 - 나. 3,055,733천원 (2021년 본예산)
 - 재단운영: 1,874,506천원
 - 문화예술회관 운영: 590,796천원
 - 선샤인랜드 운영: 590,431천원
- O 출연방법: 현금 출연

O 출연금 및 사업비 사용계획

| 구 분 | 계 | 인건비 | 운영비 | 사업비(기타) | 비고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|
| 총계 | 3,105,733 | 1,579,775 | 927,958 | 598,000 | |
| 자본금 (기본재산) | 50,000 | 1 | - | 50,000 | 2020년 3추 |
| 소계 | 3,055,733 | 1,579,775 | 927,958 | 548,000 | |
| 재단운영 | 1,874,506 | 1,341,848 (임직원 26명) | 532,658 | - | |
| 문화예술회관 | 590,796 | 19,296 (기간제) | 163,500 | 408,000 | 2021년 본예산 |
| 선샤인랜드 | 590,431 | 218,631 (기간제) | 231,800 | 140,000 | |

(단위 : 천원)

※ [별첨] 출연금 세출예산 세부내역

- 행정안전부 「2021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」 준용하여 작성

3. 주요사업

- O 국가, 충청남도, 시에서 위탁한 사업
- O 논산시 문화·관광시설 운영 및 관리
- O 문화예술교육 진흥 및 생활문화예술 활성화 지원
- O 지역축제 활성화 지원
- O 관광마케팅 및 지역 관광 진흥사업
- O 그 밖에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4. 그 동안 추진사항

- O 2019. 05. ~ 06.: 재단 설립 1차 협의(충청남도)
- 2019. 09. ~ 2020. 01.: 설립 타당성검토 용역 추진
- 2019. 10. 28. ~ 11. 04.: 설립 타당성 주민 설문조사
- 2020. 01. 14. ~ 01. 30. 설립 타당성 용역결과 주민공개

- 2020. 02. 14.: 논산시 출자·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·의결
- O 2020. 03. ~ 04.: 재단 설립 2차 협의(충청남도) 및 협의결과 공개
- 2020. 06. 01.: 전략기획실 ⇒ 관광체육과 업무 인수인계
- 2020. 09. 10.: 「논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」제정

5. 향후 추진계획

- 2020. 09. ~ 10.: 재단 선임직 임원 공개모집 및 구성
- 2020. 10. ~ 11.: 설립발기인 총회 개최 및 재단설립 허가신청
- O 2020. 11.: 재단설립 등기, 직원 채용계획 수립
- 2020. 12.: 법인 출범
- 2021. 01.: 공식 업무 개시
- 6. 문화관광관련 시설현황: [붙임 1]
- 7. 타 시·군 재단설립 현황: [붙임 2]
- 8. 관계법령 발췌서: [붙임 3]

붙임 1

문화관광관련 시설현황

1 선샤인랜드

□ 일반현황

○ 위 치: 논산시 연무읍 황화정리 859-44 일원(33,023 m²)

○ 사 업 비: 11,851백만원(국 2,511, 도 3,500 시 5,840)

O 사업기간: 2013년 ~ 2017년

O 시설현황

- 본관(993㎡): VR체험장, 실내사격장(4사로), 스크린사격장(6사로), 장비보관실, 휴게실 및 커피숍 등

- 서바이벌체험장(3,636㎡): 서바이벌경기장, 통제실(2층), 관람석
- 다목적경기장(611㎡): 풋살, 족구, 농구장 등
- 쉼터공원(8,827m²): 파고라(7조), 수도시설, 잔디광장
- 상징조형물 광장(1.510㎡), 주차장(2.280㎡ / 69면) 등

□ 시설 운영현황

- 시범운영('17.11.9~ '18.1.31.) : 19,512명(단체150개 4,558 / 개인14,954)
- 운영현황(유료화 2018. 2. l.~)

| 구분 - | ŀ | 방문자 현황(명 | 스이네어 | יון די | |
|-------|---------|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|----|
| | 합계 | 관람 | 체험 | 수입내역 | 비고 |
| 2018년 | 344,083 | 284,685 | 59,218 | 222,535천원 | |
| 2019년 | 321,252 | 269,309 | 51,943 | 220,345천원 | |

- 직원 현황: 7명(일반직 3명, 청경 1명, 공무직 3명)
- 평일 기간제 근로자 5명(체험보조 2, 청소 3)
- 주말 기간제 근로자 4명
- 주말 교통안내 기간제 근로자: 3명

2 문화예술회관

□ 일반현황

○ 위 치: 논산시 시민로270(논산문화예술회관)

O 개 관 일: 1985. 11. 19.

○ 사업기간: 1984. 10. 01. ~ 1985. 08. 10.

O 시설규모

| 대 지 | 건축연면적 | 구 조 | 비고 |
|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
| 10,091 m² | 2,615 m² | 철근콘크리트구조 지붕:인슈판넬 | 지하1층, 지상2층 |

○ 사 업 비: 866백만원

- 국비100백만원, 도비100백만원, 시비416백만원, 시민성금250백만원

○ 주차면수: 옥외주차 72대(장애인3대, 임산부2대 포함)

□ 주요 시설현황

| 구분 | 면 적 | 시 설 및 장 비 |
|----|----------|--|
| 총계 | 2,615 m² | 공연장, 전시실, 사무실, 접견실, 화장실 등 |
| 지하 | 348 m² | 전기실, 기계실, 발전기 및 유류탱크실 |
| 1층 | 1,791 m² | 대공연장(577석), 소공연장(180석), 대전시실, 접견실, 사무실, 화장실(남/여), 공연대기실 |
| 2층 | 476 m² | 소전시실, 조정실, 창고, 화장실, 휴게실 |

□ 직원현황

○ 총5명: 관장1명, 음향전문직1명, 조명전문직1명, 청경1명, 공무직 1명 ※ 시간선택 기간제 근로자(공연장 안내원) 10명

□ 시설 운영현황

| 구분 | 수 입 내 역(단위:천원) | | | н) 7 |
|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-|
| | 계 | 대관료 입장료 | 입장료 | - 비 고 |
| 2017년 | 39,289 | 30,281 | 9,008 | |
| 2018년 | 34,173 | 30,818 | 3,355 | |
| 2019년 | 30,872 | 22,537 | 8,335 | ※리모델링 사업으로 대관료 감소 |

붙임 2 타 시·군 재단설립 현황

| 시군 | 재단명칭 | 설립 연도 | 조직현황 | 예산 및 출연금 (단위:억원) | 인력 (명) | 비 | 고 |
|---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|---|---|
| 경기도 오산시 | 오산문화재단 | 2004 | 5팀 1사무국 | 예 산: 76 출연금: 58 | 45 | | |
| 전라북도 익산 | 익산문화관광재단 | 2009 | 2부 6팀 | 예 산: 32 출연금: 32 | 21 | | |
| 경상북도 청송군 | 청송문화관광재단 | 2013 | 1국 1사업단 2팀 1 전수관 | 예 산: 20 출연금: 14 | 13 | | |
| 경상북도 문경시 | 문경문화관광재단 | 2014 | 1사무국 4축제추진위원회 | 예 산: 26 출연금: 2 | 5 | | |
| 전라남도 강진군 | 강진문화관광재단 | 2015 | 2팀 3사업소 | 예 산: 8 출연금: 4 | 18 | | |
| 경상북도 영주시 | 영주문화관광재단 | 2016 | 2팀 | 예 산: 30 출연금: 6 | 13 | | |
| 전라북도 고창군 | 고창문화관광재단 | 2019 | 3팀 | 예 산: 10 출연금: 10 | 10 | | |

붙임 3

관계법령(발췌)

□ 「민법」

제32조(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) 학술, 종교, 자선, 기예,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.

□ 「지역문화진흥법」

- 제19조(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등)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문화진흥에 관한 중요 시책을 심의·지원하고 지역문화진흥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를 설립·운영할 수 있다.
 - ②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는 법인으로 하되,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「민법」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.
 - ③ 그 밖에 지역문화재단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□「지방재정법」

- 제18조(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)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.
 -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.
 -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□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

- 제4조(지방자치단체의 출자·출연과 대상 사업 등)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 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(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)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「상법」에 따른 주식회사나 「민법」또는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.
 - 1. 문화, 예술, 장학(獎學), 체육,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
 - 2.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
 - ②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을 산정할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·출연 기관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.
 - ③ 출자·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 - 1. 설립 목적
 - 2. 주요 업무와 사업
 - 3.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
 - 4.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

□ 「논산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」

- 제6조(기본재산의 조성) ① 시는 「지방재정법」제17조 및 「지방재정법 시행령」제29조에 따라 재단의 설립·시설·운영 및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에 출연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.
 - ② 재단의 기본재산은 제1항에 따른 시의 출연금과 기부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조성한다.